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2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김교흥·허종식·노종면

허성무 • 문진석 • 장철민

홍기원 • 정일영 • 윤준병

이훈기 · 김윤덕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, 어린 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,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 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, 안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 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6항 본문 중 "2년"을 "1년"으로 한다. 제22조제5항 중 "5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안전확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안전인증 등) ① ~ ⑤	제17조(안전인증 등) ① ~ ⑤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	6		
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			
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			
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			
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			
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			
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			
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			
하여 <u>2년</u> 에 1회 정기검사를 할	<u>1년</u>		
수 있다. 다만, 안전인증대상어			
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			
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			
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			
있다.			
⑦ ~ ⑪ (생 략)	⑦ ~ ① (현행과 같음)		
제22조(안전확인 신고 등) ① ~	제22조(안전확인 신고 등) ① ~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
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	5		
유효기간은 <u>5년</u> 으로 하되, 안전	<u>3년</u>		
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			
기산(起算)한다.			

⑥ ~ ⑫ (생 략)

⑥ ~ ⑫ (현행과 같음)